

총장 후보 선출 관련 경과

1. 총장 후보 선출 관련 규정

가. 2017학년도 대구대학교 단체협약서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본 협약은 대학이 정한 제 규정·규칙에 우선하며 본 협약 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28조(총장후보선출) 총장선출 방식의 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

나. 학칙: 제19장 제1절 제97조(교수회의 기능과 권한) 제4호

제19장 대학평의원회·교수회·교무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1절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제94조(대학평의원회) 본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 2. 8.)

제95조(교수회의 구성)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교수회로 구성된다.(개정 2006. 8. 18.)

제96조(교수회의 조직) ①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8. 18, 2012. 10. 22.)

② 교수회에 의장을 비롯한 임원을 둔다.(개정 2006. 8. 18.)

③ 전체교수회에 평의원회를 둔다.(개정 2006. 8. 18.)

제97조(교수회의 기능과 권한)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6. 8. 18.)

1.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6. 8. 18.)
2.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6. 8. 18.)
3. 교수 및 교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06. 8. 18.)
4. 기타 중요한 사항(개정 2006. 8. 18.)

제98조(교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교수회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교수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2006. 8. 18.)

다.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

제 2 장 전체교수회

제5조 (구성) 전체교수회는 교수회의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권한)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대학의 중 . 장기 발전계획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2. ...

②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장, 부의장, 감사의 선출
2.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의 선출
3. 대학평의원회(학칙 제94조) 교원평의원의 선출
4. 의안 관련 보직자의 출석 요구 및 현황청취,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5. 제2호 내지 제3호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규정

제3조(총장선거의 시기) 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120일에서 40일 전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② 총장이 결위된 때에는 결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제6조(선거일 공고) 총장후보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9조 (선거권자)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직원의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구성 및 조직) ① 선거위는 각 단과대학 교수회가 추천한 교원 각 1인과 직원대표가 추천한 직원 약간 명을 교수회 의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직원의 참여인원수는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바.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 세칙

2. 총장 후보 선출 관련 주요 경과

관련(일자)	내 용
영광법 제18호 (2015.03.09)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선임 대상자 추천 의뢰 - 교수회 추천 2인, 노동조합 추천 1인, 총동창회 추천 1인
영광법 제28호 (2017.03.28)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 관련 협조 요청(위원 추천 재촉구) - 2017. 4. 17.(월)까지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구 - 교수회 추천 2인, 직원 노동조합 추천 1인, 총동창회 추천 1인
노동조합-25 (2017.04.14)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 관련 회신 -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및 대의원회 개최하여 의견 조율 중 - 임시총회 등을 통한 조합원 전체 의견 청취 및 수렴하여 답변 회신
노동조합-37 (2017.05.30)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추천 -노동조합집행부회의(2017.05.23.), 대의원회의(2017.05.26.) 논의 - 위원추천: 이준희 노동조합 위원장
영광법 제108호 (2017.05.31)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위원 선임) 통지(학교법인영광학원)
2017.6.8.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6.20.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영광법 제238호 (2017.08.21)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결정 사항 통보 및 대학 측 의견(방안) 제출 요구 - 대구대학교 총장에게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대학측 의견을 2017. 9. 30.까지 이사회에 제출 요구 - 총장 선출에 관한 근거 조항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및 「대구대학교 학칙」에 규정하기로 의결함을 통보
노동조합-99 (2017.09.25)	총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 정관 및 학칙에 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 - 직원의 총장 선거 참여 비율 1인 1 요구 및 관련 규정 제정
2017.11.20.	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제3차 회의

관련(일자)	내 용
영광법 제412호 (2017.11.24)	총장 후보자 추천 - 2018년 5월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 - 총장 후보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여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 총장 후보의 선출 절차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
노동조합-2 (2018.03.07)	총장후보자 선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 전국사립대학노동조합연맹에 총장후보자선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관련 규정에 따른 직원참여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대처 방안)
노동조합-3 (2018.03.09)	교수회에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요청 - 교섭위원: 3~4명 - 개최요청일시: 2018. 03. 23.(금)
교수회-18 (2018.03.21)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 2018.03.27. 이사장 면담 후 개최일자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
2018.03.27.	이사장 면담 - 노동조합 의견 전달(직원참여율 1인 1표 요구, 총장후보자선출규정을 정관 및 학칙에 규정화 요구)
노동조합-17 (2018.04.03.)	교수회에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재촉구
교수회-22 (2018.04.03.)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원 위촉 협조 - 교수회에서 총장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위원 3명을 2018.04.09.(월)까지 제출 요청
교수회-25 (2018.04.04.)	총장후보 선거관련 협의 - 총장후보 선거관련 협의 요청 일시: 2018.04.11.(수) 오후 16:30
노동조합-21 (2018.04.06.)	총장후보 선거관련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위촉은 직원의 참여비율에 대한 협의 후에 추천토록 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대의원회의 (2018.04.09.)	총장후보 선출관련 협의 - 직원비상총회 개최(2018.04.10., 12:00) - 총장 후보 선출 직원협상대표: - 총장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직원비상총회 (2018.04.10.)	

3. 직원참여 비율

가. 대구대학교 역대 직원 투표 참여 비율(전체 교원수 대비)

선거구분	합의일자	참여비율		비고
		1차	2차	
9대 총장선거	2005. 08. 30.	13%	7%	이용두 총장
10대 총장선거	2009. 09. 15.	10%	10%	홍덕률 총장
11대 총장선거	2013. 09. 09.	15%	10%	홍덕률 총장

나. 타대학 직원 투표 참여 비율(전체 유권자수 대비)

대학명		전임교원	직원	학생	총동창회	기타	조교	계
대구 대학교	1차	86.95	13.04					99.99
	2차	90.9	9.09					99.99
조선대학교		76	13	7	3	1		100
이화여대		77.5	12	8.5	2			100
한밭대학교		82.98	13.85	2.07			1.07	99.97
충북대학교		84.03	13.45	2.52				100
군산대학교		84.03	13.69	2.26				99.98
강원대학교		85.78	10.3	2.2			1.71	99.99

4. 문제점

● 근거 규정의 비합법성

- 정관 및 학칙에 근거한 총장 후보 선출규정이 아님
-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규정이 교수회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기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전체교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직원의 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 부족

- 총장후보선출규정 제9조의 선거권에 대한 “직원의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년 혼란과 갈등이 존재함.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누구나 갖는 평등권이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직원의 참여비율이 1인 1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야만적 행태임

●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의 상호이해와 존중 부족

- 직원들이 대학 생존과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총장 후보 선출이 교수들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함